



복식부기 의무화 관련 사업자우대용 계좌 제도 안내

사업자용 계좌 제도 시행, 내년부터 미사용시 가산세 부과

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개인계좌와 별도로 사업자용계좌를 개설해 인건비와 임차료, 매입, 매출 등 사업 관련 비용과 수익을 처리토록 의무화했다.

2008년부터 '사업용계좌' 미사용시에는 거래액의 0.5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,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이 배제된다.

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자용계좌를 사용할 수 있고, 동일 사업자용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개설신고가 가능하다.

개설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상호를 적고, 통장 또는 카드 표지에 '사업용계좌'라는 문구가 표기되면 사업자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다.

사업용계좌로 개설된 통장 또는 카드는 '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'에 통장 또는 카드 사본을 첨부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.

불가피한 이유로 사업자용계좌 거래가 어렵다면 별도로 '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'를 작성해 보관

해야 한다.

이 경우 적격한 증빙(신용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)을 갖춘 거래이거나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 등은 별도 명세서 작성보관의무가 면제된다. **데뷔수**

· 자료제공 및 관련문의 : 삼성증권 박윤주대리 (02-2182-7208)

※ 삼성증권 사업자우대CMA : 신용카드 (POS형)단말기 무상/할인 지급, 08년 6월까지 이체수수료 전액면제, 유가증권 등에 대한 담보대출시 금리우대, 신용카드 결제자금 매출정보 제공 세무상담 등 자산관리서비스 등의 혜택